

전기사고 소송판례 ②



工事中에 電工 感電事故

〈1〉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가. 사 건

86가합273 손해배상

나. 원 고

1. 정 ○ ○외 4명
위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동
2. ○ ○ 자
서울 동작구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다. 피 고

주식회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가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라. 변론종결 1987. 3. 18

마.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정○○에게 금 7,122,680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원, 원고 ○○길 같

은 ○○팡 같은 ○○무 같은 ○○자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
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바.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금 68,107,623원, 원
고 김○○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길 같
은 ○○팡 같은 ○○자 같은 ○○무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 11. 16부
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사.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 7호종의 1(국가기술

자격증), 강제 11호증의 2 (장해급여사정서) 3 (수지관절운동 범위 부상에 대한 측정) 4 (장해 보상청구서) 5 (진단서), 같은 을제 1호증의 1 내지 5 (사진),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 8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 1호증의 1, 2 (진단서), 을제 2호증의 1, 2 (각 진술서), 을제 4호증(사실조회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전기공사 기능사 2급자격을 가지고 1984. 11.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가 건축한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 ○○아파트 현장 변전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84. 11. 16. 10:30경 위 현장 주변전실에서 변압기의 전압을 측정하다가 수전판 내부의 고압선에 감전되어 전기화상 우측 수부 및 좌측 족부 간 손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사고당일 위 변전실 조장인 소외 윤○○은 변전실 동력계기 에이(A)메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위 원고에게 전압등을 측정하여 변전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변전실내의 수전판을 열고 저압전압 계측기(600볼트용)를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동선(고압선로개폐기)에 잘못 갖다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원고는 위 변전실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15일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변압기 전압등 측정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회사의 전기주임인 소외 이○○이나 조장인 소외 윤○○등은 사전에 위 원고에게 변압기의 내부구조, 작업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전압등의 정확한 측정방법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 4호증(사실조회회보)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름이 없는 강제 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원고 정○○의 어머니, 원고 ○○○결 같은 ○○○평 같은 ○○○무 같은 ○○○자는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의 자격까지 갖춘 원고 정○○이 경솔하게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동선에 계측기를 갖다댄 잘못에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소외인들에게도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변압기의 구조와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앞서 본위 원고의 과실은 비록 피고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강제 5호증, 강제 7호증의 1, 강제 11호증의 2, 성립에 다름이 없는 강제 3호증의 1, 2 (간이생명표 표시 및 내용), 강제 4호증의 1, 2 (전설물가 표시 및 내용), 강제 9호증(평균임금 정정 통보)의 각 기재에 증인 윤○○의 증언 및 당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1960. 2. 11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4년 9개월 남짓하고 그 평균연령은 42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전기공사 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가지고 1984. 11. 1부터 피고회사의 가락동 ○○○ 아파트 변전실에 근무하면서 평균임금 일 금8,579.46원을 받아 온 사실, 피고회사는 위 아파트를 1984. 12말까지만 관리한 후 아파트 주민자치관리 위원회로 이관시킬 예정이었으며 위 원고도 그 동안만 피고회사에 고용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

은 상태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6. 2. 28 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15개월 이상 요양을 하였으나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도시 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강제 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전공의 1일 임금은 금 12,800원으로 월 320,000원(12,800×25) 정도되므로 그보다 적은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52,307,380원(260,958×14.5205 + 130,358×(225.1411 - 14.5205))이 된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986. 5. 16 까지 18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그동안 수입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1986. 2. 28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인 1984. 11. 1부터 55세까지 31년 3개월간 근속하고 정년퇴직시 근속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회사를 퇴직함으로써 정년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재액인 금 42,807,21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1984. 11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 2개월간 고용되었다 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 10호증(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년 이상 재직할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나) 보조구 대금 상당의 손해

위에 나온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제 1수지 절단으로 인하여 그 생존여명 시까지 의수지 1개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가격

은 금 55,000원이며 수명은 18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면,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여명이 42년 남짓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가 평생 사용할 의수지 대금 합계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고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817,395원(시료는 866,239원이니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이 된다.

(다) 과실 상계 등

따라서 원고 정종진이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모두 금 53,124,775원(52,307,380 + 817,395)이 되나 위 사고에 있어 앞서 살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중 금13,280,000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을 을제 3호증(보상금지급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간 휴업급여 금2,409,090원, 장해급여 금 5,748,23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5,122,680원(13,280,000 - 2,409,090 - 5,743,230)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정○○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각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살핀 위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 정○○의 연령 원고들의 신분관계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정○○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각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에게 위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122,680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원, 원고 ○○○같은 ○○○광 같은 ○○○무 같은 ○○○자에게 각 금 300,0

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84.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이 사건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4. 1

재판장 판사 ○ ○○외 2명

2. 감정신청 (87나1893호)

원고 정 ○ ○외 5인
피고 주식회사 ○○주택

위 사건에 관하여, 1987. 11. 21로 지정된 현장점검 및 감정기일에 감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정할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감정사항

(1) 변전실 안에 있는 수전반(受電盤) 내의 LDS(高壓線路開閉器)의 나선(裸線)에 특고압 전류(22,900볼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전반 계기를 보고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가.

(2) 위 LDS나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도 저압측정용 후크메타기를 접촉시키는 것이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3) 변전실 안에 있는 동력반계기·암페어 미터계기의 지시치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서 전

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전류를 측정하여 보라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

(가) 배전반의 문을 열고서 특고압 나선에 후크메타기를 접촉시켜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나) 지시치가 흔들리고 있는 저압판의 스위치를 단전시키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계기로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한가.

(4) 기타 관련사항

1987. 11.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서울 고등법원 민사제 7부 귀중

자체조사

(1) 재해원인

84. 11. 16 10:30분경 가락○○APT관리사무소 주변전실에서 전압측정차 후크메타기(저압계측기 600V 사용하는 것)를 가지고 우측 손으로 고압선 22,900V에 접촉시키는 순간 감전되어 재해를 입은 사고임.

(2) 재해정도

- 우수부절단: 오른쪽 1, 2번 손가락 절단 3, 4, 5번 완전폐용 및 화상 신경계통폐용
- 좌측부변연절제술: 왼 1, 2번 발가락 절단 3, 4, 5번 완전폐용, 인공힘줄 주입
- 간손상: 호흡시 심한 통증, 향후 수술을 요함

※ 상기 피해자 “정송천”은 감전사고로부터 <3재해정도 참조>수차 수술을 하였으나 향후 전공 및 어떤 직종에서도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완전 폐용자가 되었다.

진술서

성 명: 윤 ○ ○

상기 본인은 84. 11. 16일 10:30분경 가락○○아파트 변전실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굉 소리가 내부에서 울려 달려가 보

니 재해자 정 ○○은 L. D. S PANEL 앞 약 1 m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병원(잠실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음. 신고 당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 전압계측기(후크메타)와 계량기 검침표가 떨어져 있는 것과 고압축 동선에 심한 그을음(쇼트 흔적)으로 보아 사고 원인은 재해자가 계측기로 저압 측정을 한다는 것이 착각으로 인해 고압축동선에 계측기를(후크메타) 대는 순간 감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술인 윤 ○ ○

3. 본협회의 조사내용

가. 감정인 추천의뢰

서울 고등법원 제 7 민사부
1987. 10. 16

수신: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제목: 감정인 추천의뢰

당원 87나 1983 원고 송○○외 5, 피고(주)○○주택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아래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을 하고자 하오니 귀협회 소속 감정사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정인 조사결과

수신: 서울고등법원 제 7 민사부 재판장 김○○.

제목: 감정결과

귀원 87나 1893 원고 정○○외 5, (주)○○주택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련하여 의뢰한 감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아 래

- (1) 조사일시: '87. 11. 21 10:40~12:00
- (2) 장 소: 서울 강동구 ○○동 ○○주택 ○○아파트 변전실
- (3) 조사자: 대한전기협회 기술과장 김기욱
- (4) 입 회 자: 가. 고등법원 판사 김○○

나. 변호사 김○○, 홍○○

다. 삼익아파트 소장 김○○,

전기보안담당자 이○○

라. 삼익주택 박○○, 김○○

(5) 조사내용: 사고와 관련된 전기설비(22.9kV 150kVA)

(6) 감전사항에 대한 결과

(가) 변전실 안에 있는 수전반 내의 L. D. S (선로 개폐기)의 나선에 특고압(22,900V)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전반 계기를 보고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가?

○일반적으로 전기설비관리자(전공)는 수전반 계기를 보고 운영상태를 알 수 있어야 됨.

○P₁, P₂ 배전반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각종 전력량계가 부착되어 있음.

(나) 위 L. D. S (선로 개폐기) 나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데도 저압측정용 후크메타기를 접촉하는 것이 전기공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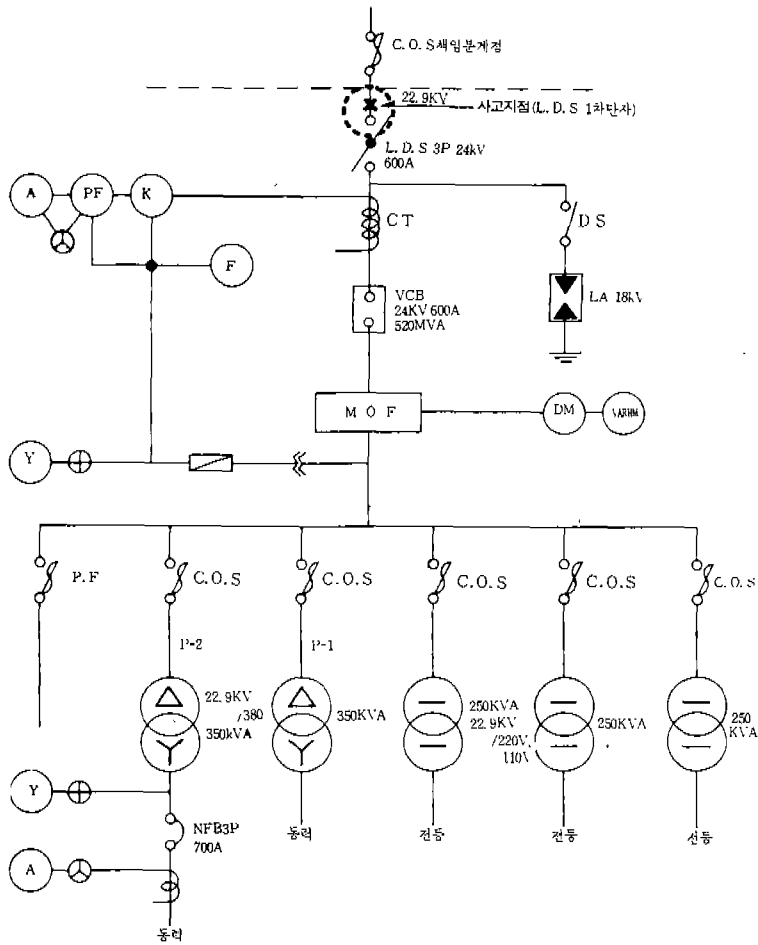
○L. D. S (선로 개폐기) 나선에 전류 또는 전압을 알려면 NO1 배전반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전류계, 전압계의 지시치를 보고서 알 수 있으며 저압측정용 후크메타로는 L. D. S 나선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임.

(다) 변전실 안에 있는 동력반 계기, 전류계(암페아메타)의 지시치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서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전류를 측정하여 보라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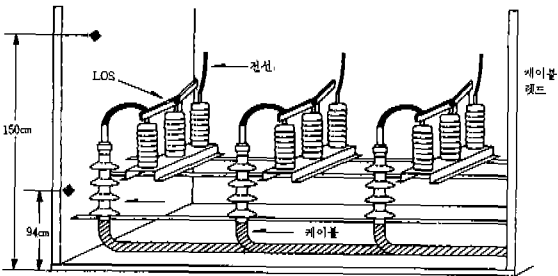
○배전반의 문을 열고서 특고압 나선에 후크메타기를 접촉시켜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가?

○동력반의 계기의 지시치가 흔들리는 이유를 확인하려면 동력반의 전류전환스위치를 돌려서 확인할 수 있고, 동력반 뒷면을 열고 그 배선을 후크메타로 측정하여야 되나, 특별고압 나선(사고지점)에서는 저압 후크메타를 접촉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봄.

○지시치가 흔들리고 있는 저압반의 스위치를



▲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 : 융접표시

단전시키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계기로
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함

(라) 기타 관련사항

○특고압 전기기기의 전압, 전류치를 알려면
계기용 변성기를 설치하여 쉽게 전압, 전류치를
알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음.

○특고압 전기기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필히
안전장비와 특고압에 해당되는 계기를 사용하여
야 됨.

- 첨부 : 1.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1부
2. 사고지점 위치도 1부

1987. 11. 24

감정인 전기기사 1급

김기욱 (인)

(다음호에 계속)